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시 해킹 방지를 위해 원격 접근·침입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의 원격 접속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는 바,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행자가 아닌 자가 원격으로 접근·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이 지정한 자 이외의 자의 원격제어 금지(안 제26조의2제1항제6호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([- 1 -](http://opinion.l</p></div>
<div data-bbox=)

awmaking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(자율주행정책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| 개 정 안 | 수 정 안 | 의견(이유) |
|-------|-------|--------|
| | | |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
- 전화(☎) 044-201-4145 / 팩스 044-201-5587